

삼육대학교 학칙 개정 (안)

1. 개정사유 및 내용

◆ 개 정 사 유
학칙 제86조에 의거하여 보다 효과적인 학사 운영을 위하여 학칙 및 학칙시행세칙을 개정하고자 함
◆ 개 정 내 용
<p>□ 학칙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) 제4장 제8조 ①~② 총장 직속기관, 부속기관, 부속교육기관 직제 개편으로 인한 신설(통합), 추가 및 폐지 2) 제20조의 2 1~2호 내용 일부 삭제 3) 제20조의 4 내용 일부 삭제 <p>□ 학칙시행세칙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) 제3장 제1조 ④항 1호 일부 삭제, 3호 신설 2) 제10장 3조 ②항 일부 삭제 및 수정, ③항 4호 일부 삭제 및 수정

2. 신 · 구조문 대비표

1) 학칙 개정

현행	개정안	비고
<p>[학칙]</p> <p>제4장 부속기관</p> <p>제8조 (부속기관) 우리 대학교에 다음의 부속기관을 둔다.</p> <p>① 총장 직속기관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삭제 [개정: 2013.4.28., 2016.2.1.,2017.2.27] 2. 삭제 [개정: 2017.2.27.] 3. 산학협력단 [신설: 2017.2.27.] 4. 창업지원단 [신설: 2017.2.27.] 5. 교육혁신단 [신설: 2017.2.27.] 6. 전인교육원 [신설: 2017.2.27.] 	<p>[학칙]</p> <p>제4장 부속기관</p> <p>제8조 (부속기관) 우리 대학교에 다음의 부속기관을 둔다.</p> <p>① 총장 직속기관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산학협력단 2. 대학일자리본부 3. 입학관리본부 4. 교육혁신단 5. 전인교육원 6. 학술정보원 7. 캠퍼스사업단 8. 예비군대대 	<p>제8조 ①항 1.~8. 신설 및 삭제</p>

현행	개정(안)	비고
<p>② 부속기관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대학교회 2. 중앙도서관 3. 정보전산원 4. 평생교육원 [개정: 2017.2.27.] 5. 국제교육원 [개정: 2017.2.27.] 6. 삭제 [개정: 2017.2.27.] 7. 재림교회/E.G. 화잇 연구센터 [개정: 2013.4.28] 8. 박물관 9. 출판부 10. 건강증진센터 11. 체육문화센터 [개정: 2013.4.28.] 12. 유치원/어린이집 [개정: 2006.1.26., 2017.2.27] 13. 삭제 [신설: 2008.1.28., 개정: 2017.2.27.] 14. 삭제 [신설: 2012.1.9., 개정: 2017.2.27] 15. 교수학습개발센터 16. 학생생활상담센터 [개정: 2017.2.27.] 17. 장애학생지원센터 18. 양성평등센터 19. 대학언론사 20. 삭제 [개정: 2017.2.27.] 21. 보육교사교육원 [신설: 2017.2.27.] 	<p>② 부속기관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대학교회 2. 생활건강증진원 3. 생활교육관 4. 화잇 연구센터 5. 박물관 6. 출판부 7. 신문사 8. 방송국 9. 콘서바토리 10. 인성교육수련원 11. 공통기기실험실 <p>③ 부속교육기관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국제교육원 2. 평생교육원 3. 유치원/어린이집 4. 보육교사교육원 	<p>②항 1.~11. 신설 및 삭제</p> <p>③항 신설</p>
<p>제2절 유급, 퇴학, 제적, 재입학, 학사경고</p> <p>제20조의 2 (유급대상) 유급 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.</p> <p>[본조 신설: 2004.12.13] [개정: 2008.1.28, 2009. 2. 18, 2010.12.17., 2016.2.1]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1년간 1, 2학기(계절학기 제외) 평점이 1.85 미만인 자 (간호학과, 약학과, 기초의약과학과에 한함) 2. 1년간 전공 및 전공필수과목 중 F학점이 3개 이상인 자 (간호학과, 약학과, 기초의약과학과에 한함) 	<p>제2절 유급, 퇴학, 제적, 재입학, 학사경고</p> <p>제20조의 2 (유급대상) 유급 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.</p> <p>[본조 신설: 2004.12.13] [개정: 2008.1.28, 2009. 2. 18, 2010.12.17., 2016.2.1]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1년간 1, 2학기(계절학기 제외) 평점이 1.85 미만인 자 (간호학과, 약학과에 한함) 2. 1년간 전공 및 전공필수과목 중 F학점이 3개 이상인 자 (간호학과, 약학과에 한함) 	<p>20조의2 1호~2호 일부 삭제</p>

현행	개정(안)	비고
<p>제20조의 4 (재이수 범위) 제20조의 2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유급된 자는 성적 부진에 의한 제적 대상에서는 제외되나 1.2학기 학점은 소실되며 등록 후 해당 학년 1.2학기 과정을 다시 이수하여야 한다. 단, 채플과 교양의 학점은 인정해 주며, 다음 학기의 수강학점은 15학점 (기초의약과학과 17학점, 약학과 20학점)으로 제한한다. 약학과는 2회 유급 시 제적된다. 또한 1학기만 이수하고도 유급대상자가 되는 자는 그 다음 학기에 휴학하여 학점등록을 신청할 수 없다. [개정: 2006.1.26, 2008.3.10, 2009.3.2., 2012.1.9]</p>	<p>제20조의 4 (재이수 범위) 제20조의 2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유급된 자는 성적 부진에 의한 제적 대상에서는 제외되나 1.2학기 학점은 소실되며 등록 후 해당 학년 1.2학기 과정을 다시 이수하여야 한다. 단, 채플과 교양의 학점은 인정해 주며, 다음 학기의 수강학점은 15학점(약학과 20학점)으로 제한한다. 약학과는 2회 유급 시 제적된다. 또한 1학기만 이수하고도 유급대상자가 되는 자는 그 다음 학기에 휴학하여 학점등록을 신청할 수 없다. [개정: 2006.1.26, 2008.3.10, 2009.3.2., 2012.1.9.]</p>	<p>20조의 4 일부 삭제</p>
	<p>부칙 1. 본 규정은 201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</p>	

2) 학칙시행세칙 개정

현행	개정안	비고
<p>제3장 등록, 학점, 수강신청, 평가, 학사경고, 휴학, 학.석사 연계과정</p> <p>제1조 (등록 - 학칙 제27조) ① ~③ 생략 ④ 등록금 1. 정규 8학기(5년제는 10학기) 등록을 필한 후에 남은 학점을 이수할 경우, 학점이 부여되지 않은 과목 및 1~3학점까지는 해당 학기 등록금의 6분의 1 해당액, 4~6학점까지는 해당 학기 등록금의 3분의 1 해당액, 7~9학점까지는 해당 학기 등록금의 2분의 1 해당액을 납부하여야 하며, 시간제등록생도 이에 준한다. [개정: 2006.1.26., 2012.1.9., 2013.2.15., 2015.3.16] 2. 생략 3. <u>신설</u></p>	<p>제3장 등록, 학점, 수강신청, 평가, 학사경고, 휴학, 학.석사 연계과정</p> <p>제1조 (등록 - 학칙 제27조) ① ~③ 현행과 동일 ④ 등록금 1. 정규 8학기(5년제는 10학기) 등록을 필한 후에 남은 학점을 이수할 경우, 1~3학점까지는 해당 학기 등록금의 6분의 1 해당액, 4~6학점까지는 해당 학기 등록금의 3분의 1 해당액, 7~9학점까지는 해당 학기 등록금의 2분의 1 해당액을 납부하여야 하며, 시간제등록생도 이에 준한다. [개정: 2006.1.26., 2012.1.9., 2013.2.15., 2015.3.16] 2. 현행과 동일 3. <u>정규 8학기(5년제는 10학기) 등록을 필한 후에 졸업필수 과목으로 학점이 부여되지 않은 과목이 남은 경우, 또는 졸업학점을 모두 이수하고 취업준비를 위해 졸업을 유예하는 학생인 경우 한 과목을 반드시 수강하고, 별도로 정해진 기본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.</u></p>	<p>제1조 ④항 1호 일부 삭제 3호 신설</p>

현행	개정안	비고
<p>제10장 학점은행제도 제3조 (학점은행제에 의한 학위수여) ①~② 생략 [표 5]학점은행제에 의한 학위종류 * 위의 과정을 본교 시간제등록, <u>사회교육원, 원격평생교육원</u>에서 84학점 이상 수강 또는 학사 타 전공으로 48학점 이수 시 총장 명의의 학위를 받을 수 있다. [개정: 2015.3.16]</p> <p>③(학위수여 요건) 아래의 자격을 갖춘 자는 학점 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 규정에 의거 학사학위를 수여 받을 수 있다. [개정: 2008.1.28, 2009.3.30, 2010.3.22., 2012.1.9]</p> <p>1.~3. 생략 4. 당해 본 대학교 <u>사회교육원 및 원격평생교육원</u>에서 취득한 학점이 84학점 이상인자</p>	<p>제10장 학점은행제도 제3조 (학점은행제에 의한 학위수여) ①~② 현행과 동일 [표 5]학점은행제에 의한 학위종류 * 위의 과정을 본교 시간제등록, <u>평생교육원</u>에서 84학점 이상 수강 또는 학사 타 전공으로 48학점 이수 시 총장 명의의 학위를 받을 수 있다. [개정: 2015.3.16]</p> <p>③(학위수여 요건) 아래의 자격을 갖춘 자는 학점 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 규정에 의거 학사학위를 수여 받을 수 있다. [개정: 2008.1.28, 2009.3.30, 2010.3.22., 2012.1.9]</p> <p>1.~3. 현행과 동일 4. 당해 본 대학교 <u>평생교육원</u>에서 취득한 학점이 84학점 이상인자</p>	<p>제3조 ②항 *표 일부 수정 및 삭제</p> <p>③항 4호 일부 수정 및 삭제</p>
	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부칙</p> <p>1. 본 규정은 201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</p>	